

주간 변화와 소통

제11-9호

2013년 4월 22일(월)

홈페이지: kttu.or.kr

트위터: twitter.com/kttu_kr

도를 넘어선 새노조의 문자공작, KT노동조합-KT비방 심각 당신은 동의하십니까?

새노조의 KT노동조합 음해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복수노조시대를 맞아 민동회의 바통을 이은 새노조. 이들은 조합원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 아무 때나 문자를 동원해 흑색선전을 한다. 물론, 발신처는 외부다. 그들은 언론에 사내게시판을 통해 정당하게 수집했다고 하나, 외부인 명의로 발신하는 문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더욱이 실제로 KT노동조합 조합간부가 새노조에 '수신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KT노동조합은 복수노조법령에 따라 소수노조로 새노조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KT노조를 어용이다 뭐다 매도하며, 명예훼손을 일삼았고, 한국노총 가입마저 비난했다. 그들이 소속된 민주노총만 상급단체인가? 노동운동을 한다는 조직이 상대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을 비난할 명분이 무엇이란 말인가.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매번 위원장 선거 후 대법원까지 올라가 기각이 되어야만 멈추는 선거무효소송 등 무작위 소송을 반복한다.

KT노동조합은 새노조의 민주를 가장한 반민주적 활동 중 특히 일부를 공개하며, 대안 없는 비난과 명예훼손을 즉시 멈출 것을 촉구한다.

핸드폰 문자로 위기 조성, 흑색선전 심각

"새노조에서 문자를 직원들에게 사전 허락 없이 보내도 법에 걸리지 않나요? 바쁜 업무에 스팸 문자가 하루에도 몇 건이 와서 짜증 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 노동조합 게시판 나도 한마디 中 -

KT직원이라면 누구나 새노조의 문자를 받아 보았을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을 핸드폰 문자로 발송하는 일은 참 편리한 방법이다. 그러나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외부에서 발송하는 문자는 엄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실제로 '새노조는 문자가 주요 홍보수단인데 KT노동조합은 왜 문자로 조합활동을 홍보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심심치 않게 받는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알릴 일이 있다면 지방본부와 지부조직을 통해 홍보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현장 조합원들은 바쁜 업무 와중에 이미 수 많은 문자를 받고 있지 않은가.

외부에 조합원 개인정보 유출?

실제로 몇몇 KT노동조합 조합간부들이 새노조에 문자를 보내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삭제했다"고 하면서도 계속 보내고 있다. 더욱이 새노조 문자 발신처는 외부이며, 이는 명백한 조합원 개인정보유출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들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흔한 전화번호 하나 없다. 주소, 계좌번호, 이메일이 전부다. 민동회도 마찬가지.

본인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는 무방비로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근거 없는 비방, 끊임없는 명예훼손

내용도 가관이다. KT와 KT노동조합을 비방하고, 음해하며, 명예훼손하는 글 일색이다. 부정적인 내용의 문자를 즐기치게 받으면 피로도도 무시 못한다.

이들이 문자와 함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일파만파를 보라. 한 달에 두어 번 발행하는 소식지에서 그들은 '회장도 퇴진, 노동조합도 물러나라'식 대안 없는 비난만 퍼붓는다.

KT 앞에 '죽음의 기업'이라는 수식어를 아무렇지 않게 갖다 붙이고, 언론에 뿌려대며 정상적으로 일하는 많은 조합원들의 사기를 꺾는다. 그들은 경쟁사 직원인가, KT 직원인가?

소수노조 인정했건만, 한국노총가입도 음해

KT노동조합이 한국노총 가입을 선언한 후 논평을 보면 악의적인 비난 일색이다.

'KT노조가 스스로 밝힌 한국노총 가입 이유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원칙과 기준으로부터 심각하게 이탈한 것이어서 우리는 KT노조의 한국노총 가입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내게 되었다.' 중략



물론, 인용할 가치조차 없으나 KT노동조합이 전국대의원대회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96.2% 대의원 동의로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인가. 단위노조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KT조합원과 KT를 지키겠다는 의도가 비난할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민주노총 활동은 정당하고, KT노동조합의 한국노총 가입은 문제가 있다는 억지인가? 이는 같은 노동운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실소를 금치 못할 민망한 현실이다. 복수노조시대를 맞아 소수노조로 인정했음에도 그들은 KT노조를 폄하하지 못해 안달이다.

일부 언론 호도, 기정사실인 듯 일파만파

새노조는 민주노총 기관지 성격을 띠는 일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KT와 KT노동조합을 음해해 왔고, 인터넷 언론의 퍼나르기에 왜곡된 비방이 마치 기정사실인양 퍼져, 명예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그간 KT노동조합은 현장과 고객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으나, 새노조의 언론플레이는 위험한 수준이어서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새노조의 활동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나 복지향상을 위한 노동운동과는 거리가 있어 정치놀이 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KT노동조합, 새노조 문자공작 법률검토 후 대응할 것

따라서 새노조의 문자공작이 계속된다면, 이제 KT노동조합은 법률적 검토로 대응할 것이다. 노동운동 주체로서 무작위 소송에 맞대응 하지 않으려 했으나, 도를 넘어서는 비민주적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됐다. KT노동조합은 지방본부, 지부를 통해 문자수신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법적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며, 이는 어디까지나 조직보호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들은 KT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조직보호활동에 벌써부터 사측개입이니 뭐니 색을 입혀 가며 언론플레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KT노동조합은 KT 내에서 건전한 노동운동이 공존하길 원했으나, 정상적인 기대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KT노동조합은 1차 조합원 서명을 토대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새노조 측에 전달할 것이며, 그럼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벌까지 강행할 방침이다.

기간	절차	내용
4월 1주	전국 조직국장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KT노동조합, 민동회-새노조의 무분별한 문자공작에 대한 심각성 논의, 개인정보보호법 법적 절차 검토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 접수키로 결정
4월 2~3주	지방본부 서명 취합	지부별 문자수취 거부 조합원 서명
4월 4주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내용증명) 발송	KT노동조합,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 민동회-새노조에 전달
(10일 경과)	요구서 처리기간	이후 문자발송 시 안전행정부에 민원접수, 과태료처벌 가능
위반 시	1회 단체 발송	600만원 과태료
	2회 단체 발송	1,200만원 과태료
	3회 단체 발송	2,400만원 과태료 부과

반복되는 무작위 소송으로 조합비 낭비 유발하는 민동회

현 11대 위원장 선거관련 소송결과 공개

1. 선거무효확인 소송 "법원, 민동 주장 기각"

노동조합은 2011년 12월 8일 치른 11대 위원장 선거 관련 선거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을 2012년 12월 18일 받았다. 이는 10대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민동회가 제기한 소송결과다. 물론 당연한 결과이지만, 민동회의 억지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당연히 민동회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났다.

<판결문 주요 내용>

사건 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20368 선거무효확인

원고 주장: (민동회) 2011. 12. 8 실시한 선거는 무효

판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2. 선거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KT노동조합, 선거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승소"

지난 3월 6일 민동회에 의해 제기되었던 효력정지가처분소송 고등법원 항고심이 재차 기각되었다. 이는 2011년말 실시했던 11대 위원장 선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으로 선거 직후 가처분 소송에서도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다 되가는 이 시점에도 의미 없는 법적 분쟁을 계속 일으켜 법원에서조차도 가처분의 무의미함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금번 고등법원 가처분 결정문뿐 아니라 지난 지방법원 본안소송의 결정문에서도 법원은 조목조목 민동회 주장의 이유 없음에 대하여 언급했다. 가처분 1, 2심, 본안소송 1심까지 동일한 주장으로 일관하여 여러 판사들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결정문을 받은 민동회는 얼마 전 본안소송 1심 결정에도 불복하고 또 다시 항고를 하여 이제 다시 고등법원 2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물론 민동회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대법원까지 갈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이들의 의미 없는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혈세인 조합비만이 낭비되고 있을 뿐이다.